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-6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 변경된 사업 명칭 반영 및 기금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(안 제4조): 2023.12.31. → 2028.12.31.

나. 사업 명칭 변경(안 제2조, 제5조, 제10조, 제12조)

- 마포하우징 → 마포 징검다리 주택

다. 주거안정자금 지원대상의 명확화(안 제10조)

- 시행규칙의 주거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조례에 명시

라. 불필요한 규정 삭제(안 제20조)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- 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3. 4. 13. ~ 5. 3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5)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 의결(2023. 5. 16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**마포하우징사업**이란”을 “**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**이란”으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**2023년 12월 31일**”을 “**2028년 12월 31일**”로 한다.

제5조제4호 및 제5호 중 “**마포하우징사업**”을 각각 “**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**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**마포하우징사업 지원대상**)”을 “(**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지원대상**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및 지원대상은 용자 및 지원**”을 “**대상은 용자**”로, “**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**”을 “**입주보증금**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**제3항**”을 “**제4항**”으로 한다.

③ 주거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임시거소용 주택 또는 매입·건설임대주택 입주자
2.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2조의 제목 “(마포하우징사업 지원대상자 선정)”을 “(마포 징검다리 주택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)”으로 한다.

제2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포하우징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“마포하우징사업”</u>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 ~ 라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“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”</u>이란 ----- 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을 <u>2023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.</p>
<p>제5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마포하우징사업</u>에 따른 용자 회수금 및 이자수입</p> <p>5. <u>마포하우징사업</u>에 따른 매입 임대주택 · 건설임대주택, 임시거소 입주계약에 따른 임대료</p> <p>6. (생략)</p>	<p>제5조(기금의 조성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</u>----- -----</p> <p>5. <u>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</u>----- ----- -----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<u>마포하우징사업 지원대상</u>)</p> <p>① (생략)</p>	<p>제10조(<u>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지원대상</u>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0조(시행규칙) <삭 제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포하우징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음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사업 명칭 변경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 : 복지동행국 생활보장과 명지현(☎3153-8812)